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양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680

발의연월일: 2021. 1. 27.

발 의 자:이양수・김은혜・정희용

안병길 · 주철현 · 정운천

추경호 · 권성동 · 이개호

권영세 · 이만희 · 김태호

김성원 · 서삼석 · 조수진

이헌승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'18년 이후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해적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권고, 선원교육, 해적동향 전파 등 해적 피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, 위험을 감수하고 고위험해역에 진입한 우리국민이 해적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등 우리국민에 대한 해적피해 우려가 높아지고,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행정력이 지속 낭비되고 있음.

고위험해역 내 해적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 치 등 강화대책을 의무화하고, 적용대상을 국적선박 또는 선원(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우리국민 포함)으로 하는 내용의 「국제항해선박 등 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,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원의 취업을 주선하는 선박관리업자에 게도 선원이 취업하려는 선박이 「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위험해역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되 는 등 선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관리업체에 대하여 선 원의 취업 주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 고자 함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」(의안번호 제767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 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2(취업 주선 제한 등)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이 취업하려는 선박이 「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 률」에 따른 고위험해역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선원의 보호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박관리업체에 대하여 선원 의 취업 주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35조제1항 중 "제34조"를 "제34조, 제34조의2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34조의2(취업 주선 제한 등) 해
	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이 취업하
	려는 선박이 「국제항해선박
	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
	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위험
	해역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되
	는 등 선원의 보호를 위하여
	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
	<u>박관리업체에 대하여 선원의</u>
	취업 주선 제한 등 필요한 조
	치를 명할 수 있다.
제35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해양	제35조(등록의 취소 등) ①
수산부장관은 해운중개업등의	
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36조	
에서 준용되는 제14조(제1호와	
제8호의 경우에 한정한다), <u>제3</u>	<u>제3</u>
<u>4조</u>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한	<u>4조, 제34조의2</u>
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	
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	
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1천만	
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	
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